

수의계약 각서

업 체 명	(주)명성엔지니어링	소 재 지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(동아프라자 301호)
대 표 자	김 선 무	업종(등록)	안전진단 및 기술용역

상기 본인(법인)은 귀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입
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
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(해제)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
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17. 04. 27.

업체명 : (주)명성엔지니어링 대표자 : 김 선 무 (인)



광주도시관리공사 귀하

< 붙임 >

- ㉠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
- ㉡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
- ㉢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
- 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, 담합행위,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, 입·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
- 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,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,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,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
- ㉥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,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- 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